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목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

제 1 조(목적)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

제 2 조(조직) 제1항중 “사무과와 직원”을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하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를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내용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직원의 정수) 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를 “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